

가정 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 생존자를 위한 차별 금지 보호법

자기 권리 및 의무 알기

뉴욕시 인권 위원회는 뉴욕 시민에게 뉴욕시 인권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인권법은 거주지를 찾고 있는 피고용인, 입사 지원자, 세입자, 개인을 “가정 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 피해자” 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보호합니다.

가정 폭력에는 가족, 친밀한 파트너 또는 식구에 의한 폭력 행위 및 위협이 포함됩니다.¹ 이러한 행위나 위협은 신체적 공격, 언어적 또는 경제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²

성범죄 및 스토킹은 뉴욕주 형사법 130항을 위반하거나 뉴욕주 형사법 섹션 120.45, 120.50, 120.55 또는 120.60을 위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뉴욕시 인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임대주, 부동산 관리자, 부동산 중개인, 기타 거주지 관련 결정자가 거주지를 찾는 신청자 또는 현 세입자를 생존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달리 대하는 경우.
- 고용인이 피고용인 또는 신청자가 생존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달리 대하는 경우.
- 고용인이 가정 폭력, 성범죄, 스토킹을 겪은 사람에게 합당한 거주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은 협조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합당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뉴욕시에서 직원을 4명 이상 두거나 가사 노동자를 한 명 이상 둔 고용인 밑에서 일하거나 해당 일자리에 지원하는 생존자.

¹ “가정 폭력 피해자” 용어의 뜻은 폭력 행위 또는 위협의 대상인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자의 현 또는 전 배우자, 피해자와 함께 자녀를 둔 사람,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한 적 있는 사람, 피해자와 낭만적 또는 친밀한 관계를 갖거나 지속하는 사람 또는 피해자와 같은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의한 자기방어 행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뉴욕시 행정법 § 8-102.

²경제적 학대에는 강압적으로나, 속이거나, 사기 치거나, 조작하여 개인이 경제 자원을 권리에 맞게 사용하거나 유지할 능력 또는 경제 자원을 얻을 능력을 통제하고, 방해하고, 간섭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뉴욕시 행정법 § 8-102.

거주지에서: 뉴욕시에서 거주하거나 거주지를 찾는 생존자이며, 다음과 같은 거주지는 제외합니다.

- 집주인이 거주하며 유닛이 광고되지 않은 2세대 주택 또는
-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함께 사는 거주지 내 방 한 개 이상.

보호법은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금지 행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직장에서:

- 가정 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을 겪는 직원이 직장에 방해가 될까 봐 해고하는 행위.
- 협조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거나 합당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예: 근무 시간 자유 선택 또는 휴가,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 근무지 교체, 연락처 정보 수정 등. 법원이나 금융 기관에서 가정 폭력, 성범죄 또는 스토킹의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비할 시간이나 자유 근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 전 파트너를 상대로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생존자를 거부하는 행위.
- 생존자가 폭력적인 파트너의 압력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임대를 거부하는 행위.
- 가정 폭력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생존자나 피해자를 퇴거시키는 행위.
- 생존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임대료 지원을 수락하지 않는 행위. 집주인은 섹션 8, CityFHEPS 등의 거주지 바우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차별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212-416-0197**로 인권 위원회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불만을 접수하거나 익명의 조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공자 또는 고용인이 인권법을 어긴 경우 거주지 또는 고용 기회를 얻거나 피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독립체는 정책을 바꾸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세입자 또는 피고용인의 권리, 고용인 또는 거주지 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무료 워크숍에 등록하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현재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 시장실의 가정 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종식(End Domestic and Gender Based Violence) 상담 전화 **800-621-HOPE**로 연락하십시오. 더 많은 자료는 [NYC HOPE 자원 디렉터리](#)에 있습니다.

뉴욕시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에 관하여 알아보려면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